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 보험

메트라이프生命保險株式會社

메트라이프生命保險株式會社

이 유 서

Inflation에 대응한 사망보장의 실질가치 보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개발 판매하고자 합니다. 끝.

2003년 7월 일

메 트 라 이 프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사장 스튜어트 솔로몬

메트라이프生命保險株式會社

확 인 서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창안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3년 7월 일

메 트 라 이 프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확인업무 담당 계리인 유 기 재

사 업 방 법 서

(사업 방법서 별지)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

2. 가입연령

만15세 ~ 70세

3. 보험기간

종신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종신납, 월납

5.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6.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최초)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1)(최초)기본보험료 : 가입연령 15~29세 : 보험가입금액의 0.3% ~ 10%

가입연령 30~39세 : 보험가입금액의 0.5% ~ 10%

가입연령 40~49세 : 보험가입금액의 0.8% ~ 10%

가입연령 50~59세 : 보험가입금액의 1.5% ~ 10%

가입연령 60~70세 : 보험가입금액의 2.5% ~ 10%

단, 기본보험료의 최소납입보험료는 5만원이상

(2)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1만원이상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단,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은 최초 가입시 계속
납입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이내로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함

7.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1년이 경과한 후 기본보험료의 증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기본보험료 증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기본보험료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나.(가)항에 의한 기본보험료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후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나)항의 승낙일 통보후 변경되는 기본보험료(이하 “기본보험료”라 합니다)는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8.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Underwriting후 보험가입금액 증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계약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여부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나.(가)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회사의 승낙여부는 계약자 신청후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나)항의 승낙일 통보후 증액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익월 월보험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는 기본보험료를 익월 월보험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기본보험료가 납입보험료 한도이하일 경우 기본보험료 증액처리 사항을 따릅니다.

마.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는 기본보험료를 익월 월보험계약해당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기본보험료가 납입보험료 한도를 넘어설 경우 회사는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는 기본보험료 감액처리 사항을 따릅니다.

9.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이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제외)의 합계액(이하 “월대체 공제액”이라 함)을 충당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후 1년6개월 동안은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18회는 납입되어야 합니다.

10.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관한사항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은 특별계정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 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로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후 1년 6개월 동안은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월 말일까지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11.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가. 기납입보험료

기납입보험료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나, 해당월 특약보험료 해당분이 납입되지 않고,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제외)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중도인출한 경우 기납입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약관대출을 포함한 계약자적립금. 이하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중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나.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기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12.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합니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3)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전액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예정이율로 부리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용한다.
- (4) (3)항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계약소멸, 해약(부활가능기간이 경과한 계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비율(전체 계약자적립금중 해당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한다.
- (5)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MMF형 : 콜론(CALL LOAN),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증금어음, 수익증권, 단기채권, 기타 제예금 등 일정등급이상 양질의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하는 펀드

(나) 우량공사채형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 혼합 안정형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50%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80%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라) 혼합 성장형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5만원이상으로 한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가) 계약자는 보험년도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이상으로 하고, 추가납입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한 펀드로 일시에 투입합니다.

(3) 펀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보험연도중 4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제 가 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한다.

(다) 회사는 제 가 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적립금의 0.2%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바.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6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다)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사.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가)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다) (가)호 내지 (나)호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3.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사업방법서 20조 가항에 따라 이체한다.

(2) 약관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3) 약관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5) 보험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총당하는 경우 (단,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이내에 하며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한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액 차감)의 50%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월계약 해당일 기준 1개월동안 두 번까지 인출가능 합니다.

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로 한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다. 인출금액은 인출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 두달치 월대체공제액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 인출후 기납입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인출후 기납입보험료} = \text{인출전 기납입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후 계약자적립금}}{\text{계약자적립금}}$$

마. 인출금액은 펀드적립금비율, 기본보험료와 추가보험료 적립금비율에 따라 각각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16.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연체보험료(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 공제액을 충당할수 없게 된날로부터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시에는 해지된날로부터 부활시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적립금과 연체보험료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부가사업비(수금비 포함) 차감)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다. 나항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을,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승낙일로 한다.

1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18. 약관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약관대출금액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약관대출 적립금 계정에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상환일에 일반계정에서 약관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라.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19. 부가 가능 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수입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무배당 암 치료 II 특약, 무배당 특정질병치료특약, 무배당 특정성인병진단특약, 무배당 입원특약, 무배당 재해입원특약, 무배당수술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단체취급특약 등

20. 기타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제(1)호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초회보험료는, 청약철회기간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단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을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 (나)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한 날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나.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무배당 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일반보험으로 전환합니다.

단, 일반보험은 계약자가 다음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종신보험 전환
- 무배당 정기보험 전환
- 무배당 연금보험 전환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약시 해약환급금

마.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수수료
- (8)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별 표 1)

보 험 증 권 서 식

(별 표 2)

보 험 계 약 청 약 서 서 식